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3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도 기준과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점포 밀집도 기준을 현행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하고, 면적 산정 시 도로, 공용면적,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(안 제3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조례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3조에서 점포 밀집도 기준을 형행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하고, 면적 산정 시 도로, 공용면적,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.
- 2025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에서 한정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규제 완화(밀집기준 30개 ⇨ 15)를 지자체 조례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함.
 - ※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완료[전통시장과-1429(2025.05.07)호 참조]
- 본 조례 개정은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, 경영 여건 개선과 함께 골목상권의 경쟁력 및 자생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